
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장철민의원·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.

발 의 자 : 장철민·서범수·박용갑
우재준·허영·김소희
송석준·김태호·정성국
유용원·정연욱·조인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·주거·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·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.

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,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

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)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4조의2(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) ① 국가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